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검 토 보 고

<비상계엄 해제 관련 대국민 감사문>
▣ 진성준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제2206835호)

2024. 12.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 1

Ⅲ. 주 문 ····· 2

Ⅳ. 검토의견 ····· 6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진성준 의원 외 169인

2. 제 안 일 : 2024. 12. 23.

3. 회 부 일 : 2024. 12. 24.

※ 의안번호 : 6835

Ⅱ.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경찰과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출입을 봉쇄하였음. 헬기를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707특임단 등 무장한 계엄군들은 본관 유리창을 파괴하는 등의 무력을 행사하며 의사당을 침탈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치 중이던 국민과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국회사무처 직원 등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한민국 시민들은 주저 없이 국회로 결집하여 계엄해제를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들을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장갑차와 경찰버스를 맨몸으로 막고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는 등 저항하고 항거하였음.

시민들의 필사적인 저항과 도움 끝에 국회는 전체 300명 의원 중 1

90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음.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로 막아낸 우리 국민께 경의를 표하며, 주문과 같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하고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고자 함.

Ⅲ.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 밤까지 이어졌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국민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하자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주저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량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손으로 헤치고 민주주의의 길목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지경에도 새벽을 밝히며 국회를 지킨 국민은 단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국회를 지켜내고,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하며 내란세력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필사적인 저항과 도움으로 국회는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은 선포된 지 2시간 34분 만에 저지되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결의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을 해제해야 함에도 독선과 아집으로 시간을 끌다가 12월 4일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가 일으켰던 내란은 6시간 만에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으며, 12월 14일 국회에 의하여 내란의 범죄로 탄핵소추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 역사의 빛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전세계는 5.18의 주먹밥이 12.3의 선결제로 이어지고, 2016년 촛불혁명이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승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 들고나온 내게 가장 소중한 빛’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빛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빛이었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연대의 빛, 민주주의를 지키는 빛이었습니다. K-팝의 합창과 함께 어우러져 세대와 성별과 계층을 뛰어넘어 국민 모두가 튼튼하게 연대한 이 빛의 물결을 대한민국과 세계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1919년 3.1독립운동,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의 역사가 2024년 12월 내란에서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를 구원했고, 과거의 죽음이 현재의 삶을 지속시킨 새 역사를 국민 스스로 써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밤 중의 내란사태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충격과 불안에서 벗어나 건강과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배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내란의 주모자들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지만, 임무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했던 계엄군 병사들과 총칼로 무장했으면서도 끝내 국민을 해치지 않으려 했던 계엄군 병사들을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던 계엄군 병사의 안타까운 눈빛에서 이들 역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임을 깨닫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으로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헌정질서가 위태로울 때마다 떨쳐 일어나 국헌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이 감사하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Ⅳ. 검토의견

1.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까지 경과[1)]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오후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관은 오후 11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발표하였음.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였으며,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었음.

한편, 12월 4일 박찬대의원・조국의원・천하람의원・윤종오의원・용혜인의원・한창민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12월 5일 오전 0시 48분에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12월 7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투표가 성립되지 못하였고 12월 8일 오전 0시 48분 표결기한 경과로 해당 탄핵소추안은 폐기되었음.

이후 12월 12일 박찬대의원・황운하의원・천하람의원・윤종오의원・용혜인의원・한창민의원 등 190인으로부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12월 13일 오후 2시 3분에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

1) 언론기사, 국회 보도참고자료, 국회 본회의 회의록 등 참조

12월 14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가 실시되어 가결되었음.

2. 감사문의 성격 등

국회는 대외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표명할 필요가 있을 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 제22대국회에서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하였음. 참고로, 국회가 감사의 뜻을 표명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한 사례로는, 「주한터키군부대의철수에대한감사메시지발송에관한결의안」(제6대국회), 「대한경제원조감사및경제원조복구요청에관한결의안」(제5대국회) 등이 있음.

본 감사문은 국회의장 명의로 발표되는 담화문이나 보도자료 등이 아닌 국회(본회의 의결)의 결의와 의사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까지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국민에 대한 감사의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려는 것임.

한편, 대외적 의사표시를 위한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관계기관에 이송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감사문은 특정한 이송 대상 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